

최종 수정일	2024.01.01.
문서 관리자	감사팀

평화그룹 윤리정책

2024.01.01.

평화그룹 윤리정책

목차

제 1 장 목적	4
제 2 장 적용 범위	4
제 3 장 윤리정책	4
제 1 조 임직원 윤리와 반부패	4
제 2 조 민감한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4
제 3 조 이해상충 방지	5
제 4 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5
제 5 조 위조 부품 방지	5
제 6 조 무역 제한 등 경제제재 준수	5
제 7 조 자금세탁 방지	6
제 8 조 정확한 문서화 및 기록	6
제 9 조 정보공개 및 공시	6
제 10 조 지식재산권 보호	6
제 4 장 정책 위반시의 조치	6
제 5 장 제보 및 신고자 보호	7
부칙	7
(별첨 1) 윤리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7
(별첨 2)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장 목적

본 정책은 평화그룹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평화오일씰, 피에프에스, 피엔디티, 평화기공, 평화씨엠비, 평화이엔지, 평화인디아, 천진평화기차배건유한공사, 천진평화기공기차부건유한공사, 천진평화엘라스틱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윤리정책

평화그룹의 윤리정책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평화그룹과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올바른 행동기준을 규정한다.

제1조 임직원 윤리와 반부패

평화그룹 임직원은 국내외 반부패 및 뇌물 방지 법규와 정책 및 세부 가이드를 준수하며, 위반시 개인은 물론 회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평화그룹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 및 비금전적인 어떠한 형태의 이익(서비스, 접대, 선물, 우대조치, 편의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그룹 임직원 상호 간에도 금품 및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더불어 평화그룹 임직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지 않는다.

제2조 민감한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평화그룹 임직원은 직무 또는 업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금

전적 및 비금전적 선물 및 접대에 대해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아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민감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뇌물 수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이해상충 방지

평화그룹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평화그룹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평화그룹 및 임직원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및 업무 정보 교환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평화그룹의 경쟁업체, 거래업체, 협력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위조 부품 방지

평화그룹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재료 수입 및 부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된 원재료 및 부품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유통되는지 확인한다.

제6조 무역 제한 등 경제제재 준수

평화그룹은 무역 제한 및 경제제재에 대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무역 제한 및 경제제재 대상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를 금지하며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제7조 자금세탁 방지

평화그룹은 국가별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며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평화그룹은 계열사 및 임직원,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 등 이해관계자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정확한 문서화 및 기록

평화그룹 임직원은 문서 작성 시, 작성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다. 특히 회계기록은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회계기록에 의거한 국가별 조세 법규를 준수하여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작성된 문서 및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문서의 위·변조 또는 기타 왜곡 행위를 금지한다.

제9조 정보공개 및 공시

평화그룹은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개하고 적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그룹 및 계열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정부 또는 고객사, 투자자 등 사업계약에 의해 정보공개를 요구 받는 경우, 기밀 유출 또는 법적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평화그룹 및 계열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평화그룹 및 계열사의 사업 중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기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별 법률을 준수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그룹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장 정책 위반시의 조치

평화그룹 윤리정책은 평화그룹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직, 면직의 6종으로 하며, 징계절차 및 양형량의 기준 등은 인사관리규정 세부 조항에 따른다.

제5장 제보 및 신고자 보호

평화그룹 임직원은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의 윤리정책 위반 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윤리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평화그룹 임직원의 내부 제보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제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일체의 보복, 차별,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피해자,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로 구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정책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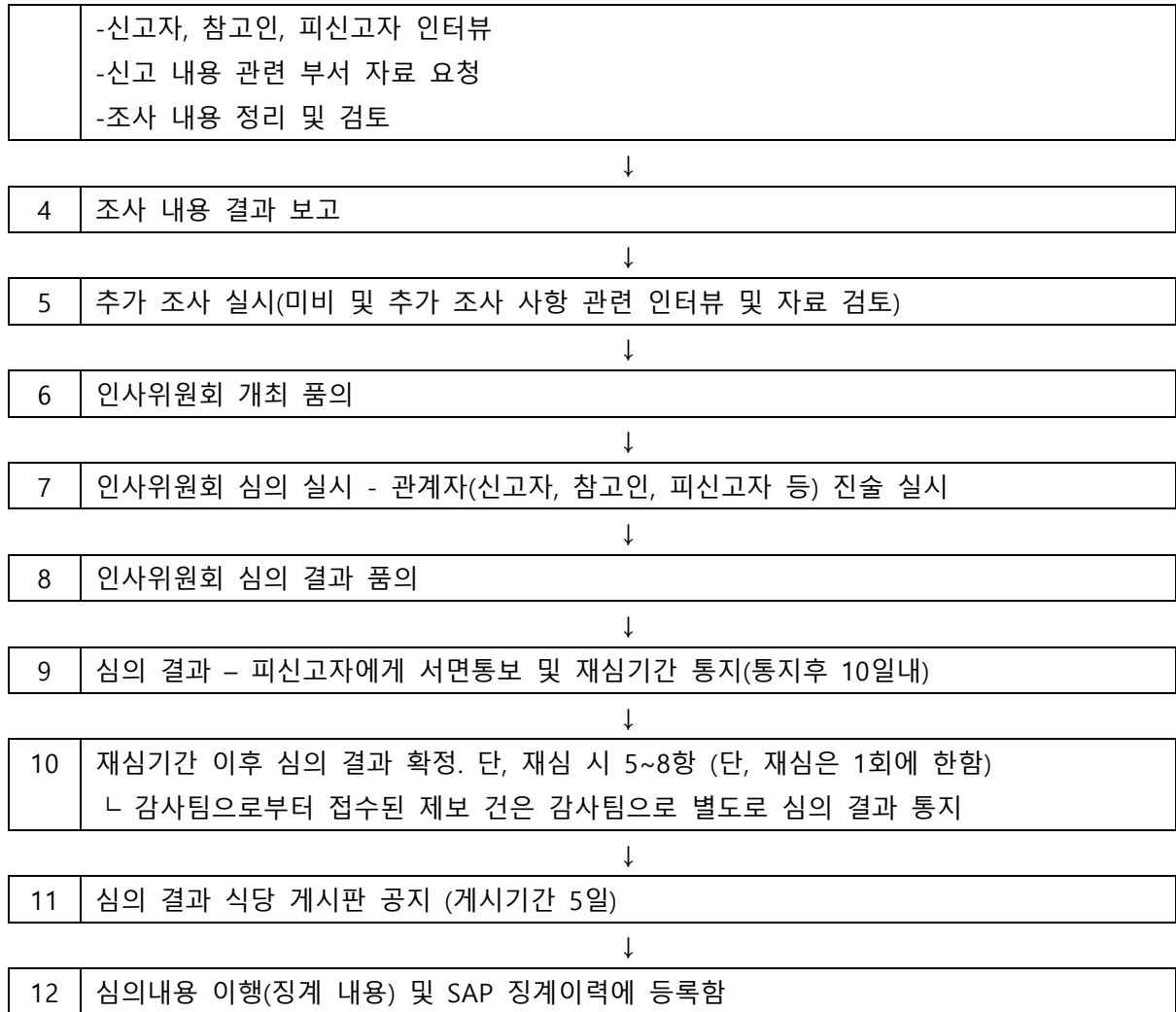
(별첨 1) 윤리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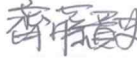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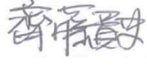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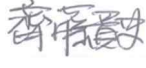














[제보접수 절차]

1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 메뉴상의 신문고 메뉴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후, 신고 내용 작성(http://www.ph.co.kr/kor/customer/cust_write.asp)
↓	
2	감사팀 사전 조사내용 접수(업무연락), 블라인드 등 통한 제보 접수
↓	
3	고충처리함 또는 노동조합 등 통한 제보 접수

[제보처리 절차]

1	신고된 내용 확인 및 검토(민원성 여부, 리스크 정도 등에 따른 분류)
↓	
2	신고된 내용 정리 및 보고
↓	
3	(조사 필요시) 신고 내용 조사 절차 착수



<p> 평화홀딩스(주) PYUNG HWA HOLDINGS CO., LTD.</p> <p>평화홀딩스(주) 각자대표이사 황 순용</p> <p></p> <p>평화홀딩스(주) 각자대표이사 김 주영</p> <p></p>	<p> 평화산업(주) PYUNG HWA INDUSTRY CO., LTD.</p> <p>평화산업(주) 각자대표이사 황 순용</p> <p></p> <p>평화산업(주) 각자대표이사 김 주영</p> <p></p>	<p> 평화기공(주) PYUNG HWA ENGINEERING CO., LTD.</p> <p>평화기공(주) 각자대표이사 김 주영</p> <p></p> <p>평화기공(주) 각자대표이사 김 준열</p> <p></p>	<p> (주)평화이엔지 PYUNG HWA ENG. CO., LTD.</p> <p>주식회사 평화이엔지 각자대표이사 김 주영</p> <p></p> <p>주식회사 평화이엔지 각자대표이사 한 동학</p> <p></p>
<p> 평화씨엠비(주) PYUNG HWA C&E CO., LTD.</p> <p>평화씨엠비(주) 각자대표이사 김 주영</p> <p></p> <p>평화씨엠비(주) 각자대표이사 홍 진기</p> <p></p>	<p> 평화오일셀공업(주) PYUNG HWA OIL & CHEMICAL CO., LTD.</p> <p>평화오일셀공업(주) 공동대표이사 김 성익</p> <p></p> <p>평화오일셀공업 (주) 공동대표이사 SAITO TAKAFUMI</p> <p></p>	<p> (주)피에프에스 PYUNG HWA P&E CO., LTD.</p> <p>주식회사 피에프에스 공동대표이사 황 순용</p> <p></p> <p>주식회사 피에프에스 공동대표이사 SAITO TAKAFUMI</p> <p></p>	<p> (주)피엔디티 Pyung Hwa P&E Co., Ltd.</p> <p>주식회사 피엔디티 공동대표이사 이 재성</p> <p></p> <p>주식회사 피엔디티 공동대표이사 SAITO TAKAFUMI</p> <p></p>
<p> 천진평화기차배건유한공사 TIANJIN PYUNG HWA AUTO PARTS CO., LTD.</p> <p>천진평화기차배건유한공사 동사장 정 상봉</p> <p></p>	<p> 천진평화기공기차부건유한공사 TIANJIN PYUNG HWA RI GONG CO., LTD.</p> <p>천진평화기공기차부건유한공사 동사장 정 상봉</p> <p></p>	<p> 천진평화엘라스틱 TIANJIN PYUNG HWA ELASTECH CO., LTD.</p> <p>천진평화엘라스틱 동사장 정 상봉</p> <p></p>	<p> 평화인디아 PYUNG HWA INDIA PRIVATE CO., LTD.</p> <p>평화인디아 법인장 전 영준</p> <p></p>
<p> 평화아메리카 PYUNG HWA AMERICA CO., LTD.</p> <p>평화아메리카 Chief Executive Officer 김 주영</p> <p></p>	<p> 엠제이비전테크 M.J. VISIONTECH</p> <p>엠제이비전테크 대표이사 김 주영</p> <p></p>	<p> 창인인재개발원 창인인재개발원</p> <p>대표이사 황 순용</p> <p></p>	